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26
----------	-------

발의연월일 : 2026. 9. 29.

발 의 자 : 박주민 · 임미애 · 이개호
송옥주 · 주철현 · 윤준병
전종덕 · 권향엽 · 신장식
손 술 · 오세희 · 신정훈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합장선거에서 여러 후보자가 한자리에서 해당 조합의 운영방향과 사업계획을 상호 비교·검증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조합원은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충분히 비교하기 어렵고, 인지도나 현직의 지위에 의존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반복될 우려가 있음. 한편 정책토론회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률적으로 주관하도록 할 경우 전국 각지의 조합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고 선거관리 인력과 비용의 부담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조합장선거를 위탁한 조합이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직접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중립적인 진행, 개최사항의 사전 공개 및 비용부담 원칙 등을 법률에 명

확히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장선거에서 위탁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직접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개최하도록 함. 또한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회자를 선정하며, 개최사항을 사전에 관할위원회에 신고하고 조합원에게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토론회 비용은 위탁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토론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0조의5 신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제30조의4에 따른 방법은 후보자가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제30조의4에 따른 방법은 후보자가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위탁단체가 제30조의5에 따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로 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를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제30조의4”를 각각 “제30조의5”로 한다.

제3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5(조합장선거 정책토론회) ① 제2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조합장선거에서 위탁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해당 조합의 운영방향, 사업계획 및 그 밖의 정책에 관한 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해당 조합의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서명하여 정책토론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 위탁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위탁단체는 모든 후보자에게 정책토론회에 참여할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발언시간·질문 및 답변의 기회 등 진행조건을 동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머지 후보자만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위탁단체는 후보자 및 위탁단체의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사회자로 선정하는 등 정책토론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위탁단체는 정책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토론주제·진행방법 및 참여 후보자 등을 개최일 전 2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해당 위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에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가 있으면 그 사실을 함께 공고할 수 있다.
- ⑥ 위탁단체는 정책토론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거나 그 영상물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 ⑦ 위탁단체는 청각장애선거인의 정보 접근을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 또는 자막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⑧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은 위탁단체가 부담하며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⑨ 정책토론회의 개최·진행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탁단체의 정관등으로 정한다.

⑩ 정책토론회의 개최신고 절차 및 정책토론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6조제2항제1호 중 “제30조의4”를 “제30조의5”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① 후보자등이 제25조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제30조의4에 따른 방법은 후보자가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① -----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제30조의4에 따른 방법은 후보자가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위탁단체가 제30조의5에 따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5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 외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26조의	1. ----- ----- ----- ----- ----- ----- ----- ----- -----

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
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른 방법

2.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5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산림
조합법」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와 「새
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 단
서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및 「신용협동조
합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
거: 제25조부터 제30조의4까
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3. 「농업협동조합법」, 「수산
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
법」,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 「농업협동조
합법」 제112조제1항 후단,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3항제2호 및 「산림조합

-----:
-----제30
조의3부터 제30조의5까지

2. -----

-----제30조의5--

3. -----

법」 제35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및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신 설>

 -----:

제30조의5-----

제30조의5(조합장선거 정책토론회) ① 제2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조합장선거에서 위탁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해당 조합의 운영방향, 사업계획 및 그 밖의 정책에 관한 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해당 조합의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서명하여 정책토론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 위탁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탁단체는 모든 후보자에게 정책토론회에 참여할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발언시간·질문 및

답변의 기회 등 진행조건을 동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머지 후보자만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탁단체는 후보자 및 위탁단체의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사회자로 선정하는 등 정책토론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위탁단체는 정책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토론주제·진행방법 및 참여 후보자 등을 개최일 전 2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해당 위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에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가 있으면 그 사실을 함께 공고할 수 있다.

⑥ 위탁단체는 정책토론회를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를 위반하여 후보자등	<u>인터넷으로 생중계하거나 그 영상물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u> <u>⑦ 위탁단체는 청각장애선거인의 정보 접근을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 또는 자막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⑧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은 위탁단체가 부담하며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u> <u>⑨ 정책토론회의 개최·진행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탁단체의 정관등으로 정한다.</u> <u>⑩ 정책토론회의 개최신고 절차 및 정책토론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	---

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25조부터 <u>제30조의4</u>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자. 다만,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등과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활동보조인은 제외한다. 1의2. ~ 13. (생략)	----- ----- <u>제30조의5</u>----- ----- ----- ----- -----. ----- ----- ----- -----. 1의2. ~ 13. (현행과 같음)
---	---